

---

# 失業家口 福祉欲求의 變化

李善雨\*·呂珮眞\*\*

---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실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는가? 둘째,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결과, 생활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했으나, 의료비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담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구직관련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도 구직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구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주의 취업상태, 실업가구원의 성별, 심리적 상태, 연령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구의 구조, 소득, 재산과 가구주의 취업상태,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실업가구, 사회복지서비스, 표현적 욕구, 잠재적 욕구

---

筆者: \* 本院 責任研究員, \*\* 서울大 社會福祉學科 博士課程 修了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朴浚厚·金美坤 副研究委員께 감사드립니다.

## I. 序 論

인간에게 노동이 주는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노동은 그들의 생활시간을 계획하고, 배분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받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원천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의 상실’이 주는 의미 또한 소득의 상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失業은 실직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에 커다란 危害를 가져다 준다. 결국 失業은 가구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결핍을 가져옴으로써 가족의 위기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 家族解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히 실업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求職과 所得保障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족상담서비스, 보호서비스 등 失業家口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유래 없는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가족의 同伴自殺, 離婚率의 증가, 아동과 노부모의 遺棄, 가정폭력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러한 실업과 雇用不安定에 기인한 사회문제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실업가구가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동일한 양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실직자의 개인적 특성, 실직가구의 유형, 그리고 실업 이전의 가족관계의 양상 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상이한 對應기제를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가구에 대해 주어

지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이들 실업자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적절한 형태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과 韓國勞動研究院이 1998년 9~10월에 실시하였던 『失業實態 및 福祉欲求調査』(이하 1998년 조사)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1999년 10월에 실시하였던 『失業家口의 生活變化 및 福祉欲求 事例調査』(이하 1999년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8년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層化標本抽出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1999년 조사에서는 1998년 조사의 표본 중에서 서울, 대전, 부산의 101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1998년 조사 당시에 실업자이면서 1999년까지 계속 실업자가 있는 가구는 59가구였으며, 이들 장기실업자가구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失業家口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변화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欲求란 일차적으로 결핍 혹은 문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失業家口가 가지고 있는 결핍 혹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실업가구가 가지고 있는 결핍 혹은 문제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결핍 혹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1998년 조사와 1999년 조사를 비교할 때 실업이 長期化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1999년 분석대상 가구의 수가 59가구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의 조사에서 실업자가 있던 가구 중에서 1년 뒤에도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追跡調査가 갖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失業家口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欲求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면서 그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은 실행하지 못하고 1998년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친 要因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실업자 개인의 특성 혹은 가구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II. 理論的 背景 및 文獻檢討

### 1. 失業으로 惹起되는 家族危機의 樣相

실업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所得中斷 혹은 所得減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의미로서 중요하지만, 이 외 혹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家族體系 내에서 노동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안정의 일차적 源泉이라는 점에서 실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즉, 실업→가족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가족체계의 변화→가족스트레스의 증가→가족위기→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이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 실업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보다는 위기로 인해 오히려 가족의 결속이 鞏固化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스트레스란 가족기능에 있어서의 欲求(예를 들면, 도전, 위협 등)와 能力(예를 들면, 자원, 대처 등) 간의 실질적인 혹은 인지적인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상태로 규정된다(Schliebner & Peregoy, 1994). 이와 같이 家族成員 전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체계는 지금까지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不安定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점점 심화되면 평소의 生活均衡

이 일시적으로 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을 시도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전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체계는 더욱 불안정해지게 되며 결국 마비되거나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가족은 위협을 받기 쉬우며 家族葛藤, 家族暴力, 別居나 離婚과 같은 가족관계상의 문제들을 노출시킬 가능성 또한 많다. 이와 같이 평소의 균형상태가 깨어져서 가족체계가 마비되거나 무력해지는 불안정한 상태를 家族危機로 본다(조성희, 1999). 실업으로 인한 가족위기의 양상은 크게 네 가지 類型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가. 經濟的 危機

실업은 일차적으로 所得의 中斷 혹은 減少로 인하여 실업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 때 경제적 고통이란 ‘개인과 가족에게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제생활의 여러 측면들’(Voydanoff, 1990; 안병철, 1999에서 재인용)로 규정될 수 있는 多次元的 개념이다.

실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貧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住宅 剝奪의 위기,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등을 겪게 된다(Chadiha, 1992; Dail, 1988; 조성희, 1999, 재인용).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으로 인한 본인의 소득상실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경제적 자원을 소유한 경우 실업과 그것으로 인한 여타의 효과를 상당히 완충해 주는 것(Buffering Effect)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貯蓄, 住宅, 退職金 등의 재정적 자원을 소유하고 부채가 없는 실업자는 그렇지 못한 실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에서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Sales, 1995).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실업으로 인한 일차적인 경제적 위기를 상당부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身體的·精神的 健康的 威脅

노동은 生計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생활의 근본적인 측면이다. 즉, 經濟活動에의 참여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의 喪失은 그것이 노동자의 행위에 의해서 촉발되었건 더 큰 경제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었건 간에 실업자의 自尊心(self-esteem)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실업자는 憂鬱, 의기소침, 그리고 적대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들의 배우자 또한 그러한 감정을 경험한다<sup>1)</sup>. 마찬가지로, 아동 또한 부모와 유사하게 의기소침이나 고립감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기제가 취약한 10대들은 특히 부모나 또래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불안정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失職者들은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고혈압, 심장 및 순환계 장애 등의 신체적 이상이나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업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코올 및 약물을 시작하거나 그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브레너(Brenner, 1987)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의 失業率은 알코올 판매량의 증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 시설에의 입원, 알코올 관련 범죄, 간경화로 인한 사망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sup>. 유사한 결과로서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연구에 의하면, 실업이 1% 증가할 때 자살은 4.1%, 살인은 5.7%, 심장병, 간경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9% 증가하며, 정신병원 입원자도 남성과 여성 각각 4.3%, 2.3%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chliebner

1) 특히, 장기실업 즉, 실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에 따른 거부, 고립, 분노, 우울, 수용의 단계와 같은 심리적 변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il, 1988).

2) 그러나 시만(Seeman, 1992)은 실업 그 자체로는 알코올 소비와 남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무력감이 알코올 사용과 남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영문, 1999에서 재인용).

and Peregoy, 1994). 따라서 失業을 경험하였거나 長期間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그 위험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Dail, 1988; Kessler et al, 1988; Beckett, 1986)

경제상태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易效果는 경기후퇴기와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Brenner, 1987; 이영문, 1999에서 재인용). 이 보고에 따르면 경기침체 첫 해에는 自殺率, 脆弱階層의 死亡率, 犯罪의 增加 등의 사회사적인 민감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嬰兒死亡率, 慢性疾患의 死亡率 등에 영향을 미치는 營養不均衡과 保健醫療 이용의 감소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영문, 1999).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은 2~3년 이후에 최고에 달하며, 특히 慢性疾患으로 인한 死亡率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인체 내 自己免疫界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혈압상승, 기회감염의 증가, 위장염 등이 생기며 면역체계 전반의 기능을 약화시켜 심리적 防禦機制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문, 1999).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직되기 전에는 초조·불안·두려움의 상태에 있다가 실직을 당하면 自尊心의 손상과 함께 우울·분노·수치심·열등감·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된다고(Volser, 1996; Walsh & Jackson, 1995; Elder & Caspi, 1998; Beckett, 1986; 조성희 재인용). 이러한 상태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없으면 더욱 深化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非自發的인 실업일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부각되며,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 특히 젊은 여성은 실업으로부터 가장 큰 심리적 손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arity, 1999).

실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 가족붕괴, 그리고 아동의 스트레스라는 ‘連鎖反應’(chain-

reaction)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Rayman, 1988; 안병철, 1999에서 재인용). 장기간의 실업에 의해 야기되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아동들에게 精神醫學的, 行動的 障礙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Collins, 1983; 안병철, 1999에서 재인용), 수치심, 고립감과 같은 일반적인 정서적인 반응에서 異常行動, 非行性向의 증가와 같은 극단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自殺과 失業率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지만, 자살은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10만명당 19.9명으로 1989년의 8.7명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1997년과 비교해 볼 때도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또한 1998년 이후 뇌졸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통·위장약 판매는 1997년보다 20% 늘어났다(중앙일보, 1999. 1. 20일자, 1998. 9. 9일자).

#### 다. 家族關係의 危機

실업자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自己비난과 외부에 대한 분노감은 外在化 되어 그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실업에 따른 욕구불만 때문에 過剩反應이나 폭력적 행동이 증가하여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ones, 1990; Dail, 1988;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의 경제적 문제의 숨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Schliebner & Peregoy, 1994). 결국, 이러한 家庭暴力은 家族成員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別居나 離婚의 원인이 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葛藤關係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직자에게 미치던 부정적인 영향이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轉移되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경향은 失職期間이 길어질수록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Jachbson, 1987;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失業과 이로 인한 貧困은 또한 家族解體의 직접적·간접적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혼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貧困線 이하 가구의 離婚率은 貧困線 이상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보다 그렇지 못한 가구의 解體 確率이 2배 이상 높았다(Hernandez, 1999).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失業率이 自殺이나 家庭暴力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犯罪率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Darity,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IMF 체제 초기에 주춤하던 이혼율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急騰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協議離婚 신청건수는 1997년 11월 472건, 1998년 들어 1월 524건, 4월 710건, 7월 830건으로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혼신청자나 상담자들 가운데 절반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事由로 배우자의 無能力 등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문화일보, 1998. 11. 2일자)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家族解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업으로 인한 家族危機의 增加와 家族解體의 경향은 要保護 兒童의 증가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발생한 要保護兒童은 총 9,292명으로 1997년 6,734명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이 중 부모가 버린 아이(棄兒)도 1,654명이나 돼 1997년 1,372명보다 28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社會關係의 危機

Sen(1997)은 실업이 所得의 喪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많은 다른 유형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일자리 상실의 부수효과로서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그 밖의 일과 관련된 활동들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排除(social exclusion)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arity, 1999). 특히, 成人에게 있

어 職場은 社會的 關係 形成의 일차적 場이라는 점에서 실업은 社會關係의 위기와 이로 인한 個人의 萎縮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의 수입감소와 심리적 위축은 기존의 相互交換的인 사회적 의무를 주고 받던 社會的 關係網-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對人關係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2. 失職家族 欲求와 社會的 서비스의 對應

### 가. 失職家族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

결국 실업은 가족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예상치 않던 家族事件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사건에 대해 가족은 나름대로의 대응기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실업으로 인한 문제는 가족의 危機를 초래하며 家族解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이라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외부적인 對應機制의 역할이 기대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 같은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러한 실업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가족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다차원적으로 査定할 필요가 있다.

이 때 欲求란 해결되어야 할 문제 혹은 결핍의 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되는 사회적 욕구란 集團的 次元에서 해결되어야 할 욕구,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radshaw(1972)는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욕구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최성재, 1990에서 재인용).

먼저, 規範的 欲求(normative need)는 전문가, 행정가 또는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 및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욕구충족의

수준을 정해 놓고 이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하여 욕구의 정도를 규정하든가 또는 최고의 욕구수준을 정해 놓고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하여 욕구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욕구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기준을 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지식의 발전과 사회의 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感觸的 欲求(felt need)는 욕구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하여 인식되는 욕구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의 상태에 있는지(또는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보아서 파악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촉적 욕구는 실제적인 욕구의 측정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認識 정도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

셋째, 表現的 欲求(expressed need)는 서비스를 실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로 파악되는 욕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比較的 欲求(comparative need)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욕구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欲求充足을 위한 급여(서비스)의 수준을 미리 정하고 이 수준에 의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감촉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이다. 즉, 일차적으로 욕구를 어떠한 결핍 혹은 문제의 상황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감촉적 욕구는 욕구의 가장 넓은 범주에서 주요한 사회복지의 潛在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定義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결핍 혹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표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이들은 결핍 혹은 문제를 개인적 혹은 家族內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한다면 이를 표현적 욕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研究에서는 『失業實態 및 福祉欲求調査』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실업가구의 潛在的 欲求와 表出的 欲求를 탐구

해 보고자 한다.

### 나. 失職家族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의 類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은 매우 부정적인 生活事件(negative life events)을 형성하며, 실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욕구 또한 매우 多次元的인 것이다(Sales, 1995).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업에 대한 社會政策的 접근은 주로 經濟的 접근에 의존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社會心理的·家族關係의 측면에서의 접근은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업자와 그 가족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經濟的 資源의 고갈에 따라 심화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련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차원과 함께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관계적 효과들에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적 접근 또한 이러한 다양한 실업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失業者에 대한 社會福祉政策은 크게 社會保險과 公共扶助 중심의 현금이전과 현물과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실업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現金移轉의 대표적인 것으로 雇傭保險의 失業給與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도입시기가 일천하여 受給對象者가 제한되어 있으며<sup>3)</sup>, 급여의 기간도 매우 짧아 특히 長期失業者를 위한 생계보장으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공공부조로서의 限時的 生活保護事業은 기존의 근로능력 없는 빈민을 주 대상으로 하던 생활보호사업을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업자에까지 확대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여전히 그 대상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급여의 수준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3) 경제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가입범위 또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는 정규직 위주의 안정적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며, 특히 일용직 피용자는 여전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실업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보호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이러한 雇傭保險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같은 현금이전은 실업가구의 경제적 대처기제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위기를 완충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효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금이전과 補完關係에 있으면서, 본 연구의 관심의 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더욱 더 제한적이다. 기존의 對象領域別 서비스, 즉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이 실업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욕구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求職相談과 각종 구직지원서비스가 실업자에 대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社會福祉政策은 실업자 개인이나 실업가구의 위기에 대처하는 외부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大量失業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욕구를 査定하고, 실업이 長期化되면서 사회복지욕구가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사회복지욕구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 目的이 있다.

### Ⅲ. 社會福祉서비스 欲求에 대한 分析

#### 1. 基礎分析: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査定

주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의 차원에서 실업가구의 욕구를 사정한다. 각각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다시

緊急, 現物서비스 욕구, 相談서비스 욕구, 保護서비스 욕구, 그리고 고용 관련서비스로 나누어서 분석되며, 추가적으로 아동양육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욕구가 분석된다.

이 때 긴급현물서비스 욕구란 갑작스러운 소득의 단절로 유발되는 긴급한 욕구에 대한 대응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긴급식품비, 긴급의료권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自活保護對象者, 限界階層 失業者, 露宿者, 老弱者, 難民 등의 현금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부조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긴급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貧困階層과 次上位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직가족은 일차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이 가장 주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소득단절로 인해 혹은 여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내외적으로 다양한 心理社會的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개인과 배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이 주요한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因子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담서비스는 이러한 실직가족이 겪는 갈등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가족 간의 지지적이고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구직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保護서비스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단절, 가족내 갈등, 혹은 求職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족의 유리 등으로 인해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 혹은 결여된 가구에 대해 그들의 자녀나 노부모를 중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족의 재결속과 재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될 수 있다.

실직가족 문제의 일차적 근원은 실직으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失業家口員 혹은 여타 가구원의 재취업,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관련서비스는 실업가구원에 대해 구직활동비, 구인정보, 구직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여기에서, 긴급 현물서비스와 구직 관련 서비스는 주로 실업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며, 상담서비스와 보호서비스는 身體的·精神的 건강과 가족 및 사회관계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 가. 潛在的 欲求

잠재적 욕구는 구체적인 요구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요청되는 결핍 혹은 문제의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욕구를 가진 실업가족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대상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 ① 緊急 現物서비스 潛在的 欲求

1998년 『失業實態 및 福祉欲求調査』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자녀의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였다’의 문항이 잠재적 욕구로서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1〉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1998年)

	생계유지 부담		의료비 부담		자녀교육 부담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혀 그렇지 않다	115	4.2	223	8.4	2,017	94.1
그렇지 않다	302	11.1	759	28.7		
그저 그렇다	398	14.7	320	12.1		
그런 편이다	1,093	40.3	943	35.7	110	5.2
매우 그렇다	804	29.6	398	15.1		
합 계	2,711	100.0	2,643	100.0	2,127	100.0

전체 실업가족의 약 70%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50.8%가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5.2%가 자녀의 進學

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업가구의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생계유지와 의료비 부담에서 각각 29.6%와 15.1%로 나타나, 일차적인 경제적 욕구도 해결되지 못하는 실업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실업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수도 전체 실업가구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업가구에 대한 긴급식품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현물지원 서비스의 잠재적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失業家口의 生活變化 및 福祉欲求 事例調査』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중에서 생계비 문제, 의료비 문제, 자녀교육비 문제가 긴급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중에서 67.8%가 생계비 문제가 있으며, 25.4%가 의료비 문제가 있고, 33.9%가 자녀교육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두 조사에서 약간 문항의 변화가 있으나 생계비에 대한 潛在的 欲求는 비슷한 반면에 의료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감소하였으며 자녀교육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2〉 緊急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1999年)

	생계비 문제		의료비 문제		자녀교육비 문제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있다	40	67.8	15	25.4	20	33.9
없다	19	32.2	44	74.6	39	66.1

## ② 相談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상담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크게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로 분류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는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表

3>의 문항들이 포함되며, 家族問題에 대한 상담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한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자녀의 비행행동이 증가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 심리상태에 대한 문항의 경우 15~50%의 실업자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심리상태에 있다(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상태가 매우 심하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5~15% 내외에 이른다. 또한, 극단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실업자의 비율도 5.1%에 이르러 專門的 상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실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업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의 일부 혹은 전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個人的으로 혹은 家族內的 關係網이나 社會的 支持網을 통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 혹은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을 경우는 각종 상담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表 3> 失業者 個人的 心理的 狀態(1998年)

(단위: %)

심리상태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2.9	25.7	18.9	34.2	8.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	6.0	13.0	14.9	52.6	13.5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10.5	24.5	17.7	38.2	9.1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1.5	27.9	17.6	33.0	9.9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6.4	18.0	15.5	46.4	13.7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21.8	40.3	16.0	17.1	4.9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민다	11.2	23.9	17.0	38.1	9.8
잘 다룬다	19.3	39.3	15.8	20.7	4.8
매사가 힘들다	7.0	14.8	15.7	45.0	17.5
허무한 느낌이다	7.6	15.3	16.5	45.9	14.6
외롭다	13.7	26.9	18.7	30.1	10.6
죽고싶은 기분이다	31.9	35.5	13.1	14.4	5.1

1999년 『失業家口의 生活變化 및 福祉欲求 事例調査』에서도 동일한 문항으로 실업자의 심리상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表 4>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여 장기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兩極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실업자들은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심리상태가 완화되는 반면에 일부 실업자들은 심리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998년 조사에서 13.7%였으나 1999년 조사에서는 21.1%로 증가하였으며, ‘죽고싶은 기분이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1%에서 16.0%로 급증하였다.

<表 4> 失業者 個人的 心理的 狀態(1999年)

(단위: %)

심리상태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21.2	28.8	9.6	25.0	15.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	8.6	20.7	8.6	31.0	31.0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11.5	51.9	5.8	19.2	11.5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5.5	43.1	3.4	19.0	19.0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7.0	21.1	17.5	33.3	21.1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38.0	40.0	8.0	10.0	4.0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민다	13.5	26.9	15.4	15.4	28.8
잘 다룬다	24.6	49.1	10.5	8.8	7.0
매사가 힘들다	6.8	8.5	11.9	23.7	49.2
허무한 느낌이다	17.8	13.3	11.1	31.1	26.7
외롭다	15.2	34.8	15.2	21.7	13.0
죽고싶은 기분이다	26.0	26.0	8.0	24.0	16.0

다음으로 家族關係의 측면에서 볼 때 1998년 조사에서 부부싸움이 매우 잦은 경우가 전체 실업가구의 5.0%, 자녀의 학업성적이 매우 떨어진 가구가 5.8%, 그리고 자녀의 非行行動이 매우 증가한 경우가 3.8%로 나타났다. 이로 유추해 볼 때, 전체 실업가구의 5% 내외가 가족문제에 인

한 潛在的 相談 欲求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5〉 夫婦 및 子女問題(1998年)

	부부관계		자녀 학업성적		자녀 비행행동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혀 그렇지 않다	462	24.4	342	29.2	564	48.6
그렇지 않다	685	36.2	478	40.8	491	39.7
그저 그렇다	295	15.6	144	12.3	59	5.1
그런 편이다	358	18.9	138	11.8	33	2.8
매우 그렇다	94	5.0	68	5.8	44	3.8
합 계	1,893	100.0	1,170	100.0	1,160	100.0

1999년 조사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중에서 가정 불화, 자녀비행의 항목과 초·중·고·대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양육에 따른 어려움 중에서 學業成績 하락의 항목이 가족문제로 인한 잠재적 상담욕구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가구 중에서 家庭不和의 문제가 있는 가구는 11.9%, 子女非행의 문제가 있는 가구는 5.0%, 학업성적 하락의 문제가 있는 가구는 80.0%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업이 장기화되면 잠재적인 상담욕구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保護서비스 欲求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또는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친지에게 위탁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므로 엄격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로 분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보호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로 분류하여 2% 내외의 실업가구가 아동위탁 혹은 부모위탁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잠재적 욕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98년 조사에서는 兒童委託을 한 가구는 2.0%, 부모위탁

을 한 가구는 1.3%로 조사되었다. 1999년 조사에서는 이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表 6〉 保護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1998年)

	아동위탁		부모위탁	
	가구수	%	가구수	%
그렇다	44	2.0	27	1.3
아니다	2,158	98.0	2,072	98.7
합 계	2,202	100.0	2,099	100.0

#### ④ 家口類型別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

失業家口는 전체적으로 一般家口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이러한 실업가구 중에서도 특정의 욕구를 가진 家口員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더 많은 욕구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老人이나 障礙人을 포함하는 실업가구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실업가구에 비해 추가적인 욕구 혹은 더 많은 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失業家口<sup>4)</sup>를 살펴보면, 1998년 조사에서 이들 가구는 전체 실업가구에 비해 생계유지 부담이나 의료비 부담이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총지출에서 食料品費와 醫療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실업가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表 7 참조).

1999년 조사에서 老人扶養失業家口는 5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생계비 문제가 있는 가구는 100%, 의료비 문제가 있는 가구는 40%로 나타났다.

4) 1998년 조사에서 전체 실업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실업가구는 421가구로 전체 실업가구(2,771가구)의 15.2%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노인부양을 하는 실업가구는 전체 59가구 중에서 8.5%였다.

〈表 7〉 老人扶養失業家口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1998年)  
(단위: %)

	전체 실업가구	노인부양실업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	69.8	85.3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50.6	62.0
총지출 대비 식료품비의 비중	33.2	38.0
총지출 대비 의료비의 비중	9.4	10.8

다음으로, 실업가구 중 障碍人이 포함되어 있는 실업가구<sup>5)</sup>의 경우 1998년 조사에서 生計維持, 醫療費, 子女教育費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4.7%, 59.8%, 9.7%로, 앞의 <表 1>에서 나타난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가구가 현물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도 생계비 문제, 의료비 문제, 자녀교육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각각 87.5%, 50.0%, 37.5%로 나타났다.

〈表 8〉 障碍人 失業家口의 現物서비스에 대한 潛在的 欲求(1998年)  
(단위: %)

	생계유지 부담	의료비 부담	자녀교육 부담
전혀 그렇지 않다	5.7	9.0	91.3
그렇지 않다	8.7	22.2	
그저 그렇다	10.9	9.1	
그런 편이다	34.7	41.0	9.7
매우 그렇다	40.0	18.8	
합 계	100.0	100.0	100.0

5) 1998년 조사에서 실업가구 2,771가구 중에서 장애인인 있는 가구는 12.8%인 495가구였다. 1999년 조사에서 실업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3.6%인 8가구가 있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조사표의 항목에 장애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나. 失業家口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주지한 바와 같이, 表現的 欲求란 서비스를 실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로 파악되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서 표현적 욕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提供者 즉, 欲求査定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서 살펴본 잠재적 욕구에 비해 消極的인 욕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分配 次元에서 표현적 욕구에 주목함으로써 目標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는 長點을 부각시킬 수 있다<sup>6)</sup>.

### ①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긴급 현물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緊急食品卷, 緊急醫療費, 學費 支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표현된다. 1998년 조사에서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56.9%, 68.1%의 실업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잠재적 욕구로서 생계의 곤란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응답비율과는 반대의 결과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식품권과 같은 경우 상당한 烙印(stigma)이 붙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優先順位로서 간접적으로 추정가능한데, 전체 실업가구의 57.7%가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자녀 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表 9 참조).

1999년 조사에서는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 47.4%,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적 욕구에만 주목할 경우 진정한 욕구를 가지고서도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39.0%의 실업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실업가구의 47.4%가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保健醫療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조사에서 새로운 긴급의료비 도입보다는 현 醫療保險制度 내에서의 지원이나 보건소의 무료 혹은 실비 치료 등의 현존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과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10 참조).

〈表 9〉 失業家口의 緊急 現物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1998年)

(단위: %)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학비 지원
매우 필요	20.7	30.7	자녀양육 우선순위 ↓ 57.7
필요	36.2	37.4	
보통	22.6	18.8	
불필요	18.1	11.1	
매우 불필요	1.1	0.8	
무응답	1.3	1.1	
합계	100.0	100.0	

〈表 10〉 失業者의 保健醫療對策 要求順位(1998年)

(단위: 명, %)

내 용	빈도	비율
월 의료보험료 50% 지원	1,313	41.1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또는 실비이용 확대	544	17.1
정부가 실비보조하는 실업가족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	403	12.6
긴급의료비 지원	305	9.6
실업전 가입한 의료보험 혜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305	9.6
실업자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 담당제 실시	129	4.0
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치료비 대부사업	100	3.1
기타	91	2.9
합 계	3,190	100.0

## ② 相談서비스에 대한 表現的 欲求

1998년 조사에서 전체 실업자 중 12.7%가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상담받고 싶은 문제로는 經濟的 困難, 就業問題, 失業스트레스, 夫婦葛藤, 兒童/父母扶養, 자녀부양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일차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家族危機의 일차적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점은 所得階層別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상담욕구는 41.0%인 반면 40~60만원은 16.7%, 60~80만원은 12.4%, 80~100만원 12.5%, 100만원 이상은 17.4% 등<sup>7)</sup>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失業家口의 상담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제3자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대해 상담받고자 하는 비율도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8)</sup>(表 11 참조).

〈表 11〉 相談을 願하는 問題의 類型(1998年)

(단위: %)

문제 유형	실업 스트레스	경제적 곤란	취업 문제	부부 갈등	아동/부모부양	자녀 비행	기타	합계
비율	21.9	42.3	23.4	5.0	2.2	1.6	3.6	100.0(400명)

## ③ 求職關聯 서비스 欲求

구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求職活動費와 求人情報의 필요성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서 전체 실업자의 70.4%가 구직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66%가 他地域의 구인정보가 필요하다고

7) 전체 상담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실업가구 407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의 결과이다.

8) 참고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담기관으로는 전문상담기관 44.0%, 사회복지관 28.6%, 종교기관 10.1%, 병원 6.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 응답하여 실업자의 구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失業’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就業’이라고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表 12 참조).

1999년 조사에서는 구직활동비와 타지역 구인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56.0%, 4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자의 구직관련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12〉 求職 關聯 서비스에 대한 欲求

	1998년		1999년	
	구직활동비	구인정보 (타지역)	구직활동비	구인정보 (타지역)
매우 필요	28.7	27.9	15.3	13.6
필요	42.7	38.1	40.7	33.9
보통	16.1	15.6	10.2	15.3
불필요	10.1	13.1	28.8	23.7
매우 불필요	1.1	3.5	5.1	10.2
무응답	1.3	1.8	0.0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2. 失職家口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가. 模型構築 및 變數의 設定

실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多次元的인 것이며, 따라서 欲求도 多次元的으로 규정된다. 또한 동일한 실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서도 각 가족의 스트레스 정도와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 대처 양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실업가구의 욕구의 정도-근본적으로 볼 때 가족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欲求의 査定과 給與의 決定에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욕구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199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정도(욕구의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상담받고 싶은 욕구, 구직활동비,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税金 및 公課金 減免에 대한 욕구 중 조사 대상 실업가구가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수로 규정된다.<sup>9)</sup>

독립변수는 失業家口 특성군과 家口主 특성군, 그리고 應答者 특성군으로 분류된다. 실업가구 특성으로는 全體 家口員數, 就業家口여부, 失業家口여부, 罹患家口여부, 65세 이상 가구여부, 20세 미만 가구여부, 障礙家口여부, 家口所得, 家口財産, 家口類型(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 자녀가구, 편부모·조부모가구, 기타가구)이 포함되었다. 가구주 특성군으로는 가구주의 結婚狀態(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 性別, 年齡, 教育水準, 가구주의 同居여부, 가구주의 雇傭形態(실업,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포함되었으며, 응답자 특성군에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이혼여부, 결혼상태(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 가구주 여부, 교육수준 및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心理狀態는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 나. 分析과 結果

복지욕구는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表 13 참조). 失業者家口의 평균 福祉欲求는 3.23, 失望失業者家口는 2.92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賃金勤勞者家口와 非賃金勤勞者家口는 각각 0.06, 0.11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F=817.85$ ,  $p<0.0005$ ). 한편, 1998년 조사와 1999년 조사를 비교하기 위해 복지욕구를 상담받고 싶은 욕구를 제외한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구직활동비,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세금 및 공과금 감면에 대한 욕구 중 조사 대상 실업가구가 받기를 원하는

9) 노인부양 지원, 장애인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문제자녀에 대한 도움의 욕구는 일부 실업가구에만 해당되는 욕구여서 종속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의 수로 규정하였을 때, 1998년 조사에서 失業者家口의 평균 복지욕구는 3.12, 失望失業者家口는 2.81이었으며, 賃金勤勞者家口와 非賃金勤勞者家口는 0으로 나타났다(F=181.26, p<0.0005). 1999년 조사에서 실업자가구의 평균 복지욕구는 2.68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表 13> 就業狀態에 따른 福祉欲求(1998年)

경제활동상태	사례수	평균복지욕구	표준편차
실업자	3,092	3.23	0.032
실망실업자	329	2.92	0.098
임금근로자	1341	0.06	0.006
비임금근로자	370	0.11	0.016
합계	5,132	2.15	0.029

구체적인 복지욕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1998년 조사와 1999년 조사의 차이는 <表 14>와 같다.

<表 14> 1998年과 1999年의 福祉欲求 比較<sup>1)</sup>

(단위: %)

	1998년	1999년
긴급의료비	68.3	39.0
긴급식품권	56.6	47.5
구직활동비(교통비 등) 보조	71.3	55.9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84.0	78.0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65.7	49.1

註: 1) 각 복지욕구를 필요('매우 필요'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냄.

전반적인 특징은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복지욕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失望失業者를 포함한 失業者와 賃金勤勞者와 非賃金勤勞者를 포함한 就業者에 대해 1998년 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욕구를 비교해 보면, 실업자의 복지욕구는 평균 3.2인 반면에 취업자의 복지욕구는 0.0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 조사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就業家口員數에서는 실업자 가구에서 0.8명, 취업자 가구에서 1.8명이며, 失業家口員數에서는 실업자가구에서 1.1명, 취업자가구에서 1.3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수도 실업자가구에서는 0.19명, 취업자가구에서는 0.15명으로 실업자가구에서 더 많았다.

家口所得은 실업자가구에서 67만 4천원, 취업자가구에서 101만 6천원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나타났다. 家口主의 教育年限에 있어서는 실업자가구에서는 9.6년, 취업자가구에서는 10.0년으로 취업자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年齡을 비교해 보면, 실업자가구에서는 37.5세, 취업자가구에서는 36.9세로 실업자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

<表 15> 就業狀態에 따른 變數의 技術統計와 t-檢證 結果(1998年)

	전체		취업자		실업자		통계적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복지욕구	2.15	2.09	0.07	0.25	3.20	1.80	***
가구원수	3.6	1.4	3.6	1.4	3.6	1.4	-
취업가구원수	1.1	.96	1.8	.87	.82	.84	***
실업가구원수	1.2	.53	1.3	.43	1.1	.58	***
이환가구원수	.52	.74	.53	.75	.51	.73	-
65세 이상 노인수	.18	.45	.15	.42	.19	.46	**
20세 미만 자녀수	.45	.78	.46	.78	.44	.77	-
가구소득	79.1	83.4	101.6	83.6	67.4	80.8	***
가구재산	2.8	2.0	2.8	2.1	2.74	2.0	-
가구주 교육연한	9.7	4.1	10.0	4.1	9.6	4.1	**
가구주 연령	47.2	12.9	45.2	13.0	48.1	12.7	***
응답자 연령	37.3	12.2	36.9	11.7	37.5	12.4	-
응답자 교육연한	11.0	3.6	10.9	3.7	11.1	3.5	-
응답자 심리상태	35.4	10.3	34.9	10.1	35.6	10.3	*

註: \* p <0.05; \*\* p<0.01; \*\*\* p<0.001

실업자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表 1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I은 家

口變數만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경우에 비장애인가구보다 복지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所得과 財産도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욕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僱傭形態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구주가 日傭職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자에 비해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beta$ 값이 가장 큰 장애가구여부이며, 家口類型, 가구주의 고용형태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의 수정 R제곱은 0.040으로, 이 모형이 복지욕구의 變量의 4.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II에서는 응답자의 個人變數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應答者의 性別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結婚狀態는 未婚인 경우에 既婚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도 기혼인 경우보다 복지욕구가 줄어들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증가할수록 복지욕구는 떨어졌다.

응답자의 心理狀態는 모형 II에서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심리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복지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II의 수정 R제곱은 0.093으로, 이 모형이 복지욕구 변량의 9.3%를 설명하였다.

모형 III은 가구변수와 개인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모형 I에서와 달리 就業家口여부가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가구인 경우에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障礙人家口여부는 모형 I에서와 같이 모형 III에서도 여전히 복지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여전히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소득과 재산

이 증가할수록 福祉欲求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類型은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와 관련된 변수들은 모형 I에서와 같이 모형 III에서도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가구주가 일용직인 경우에 가구주가 실업자인 경우에 비해 복지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와 모형 III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의 性別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福祉欲求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狀態에 있어서는 모형 II와 모형 III에서는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에 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지욕구가 작아지는 경향을 두 모형 모두에서 보였다.

〈表 16〉 失業者의 福祉欲求에 대한 回歸分析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상수	3.007***	-	2.286***	-	2.636***	-
가구원수	0.028	.022	-	-	0.042	0.036
취업가구여부	-0.112	-.048	-	-	-0.136*	-0.064
실업가구여부	-0.046	-.013	-	-	0.052	0.016
이환가구여부	0.067	.019	-	-	0.036	0.012
노인가구여부	.104	.019	-	-	-0.063	-0.013
20세 미만자녀 가구여부	.139	.037	-	-	-0.048	-0.001
장애가구여부	0.440***	.088	-	-	0.286**	0.065
가구소득	-0.001*	-.049	-	-	-0.0009*	-0.051
가구재산	-0.074***	-.085	-	-	-0.005**	-0.064
단독가구 <sup>1)</sup>	-0.039	-.005	-	-	-0.307	-0.044
부부가구 <sup>1)</sup>	0.235	.039	-	-	0.057	0.011
편부모·조부모가구 <sup>1)</sup>	0.153	.013	-	-	0.062	0.006
기타 가구 <sup>1)</sup>	0.143	.041	-	-	-0.063	-0.020
가구주성별 <sup>2)</sup>	-0.052	-.011	-	-	-0.036	-0.009
가구주교육	0.017	.043	-	-	0.019	0.051

註: 1) 비교범주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남성이 '1', 여성이 '0'임.

〈表 16〉 계속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가구주 미혼 <sup>3)</sup>	-0.057	-0.008	-	-	0.144	0.024
가구주 이혼·별거·사별 <sup>3)</sup>	0.221	0.045	-	-	0.082	0.019
가구주 동거여부	0.301	0.019	-	-	-0.216	-0.014
가구주 연령	0.0005	0.003	-	-	0.007	0.051
가구주 정규직 <sup>4)</sup>	-0.073	-0.010	-	-	-0.097	-0.015
가구주 임시직 <sup>4)</sup>	-0.100	-0.020	-	-	-0.143	-0.033
가구주 일용직 <sup>4)</sup>	-0.435***	-0.087	-	-	-0.286*	-0.062
응답자 성별	-	-	0.256***	-0.079	0.226**	0.070
응답자 이혼여부	-	-	0.127	0.030	0.106	0.025
응답자 미혼 <sup>5)</sup>	-	-	-0.196*	-0.061	-0.213	-0.066
응답자 이혼·별거·사별 <sup>5)</sup>	-	-	0.384**	0.064	0.328	0.054
응답자 연령	-	-	-0.007*	-0.057	-0.011*	-0.091
응답자 가구주 여부	-	-	-0.097	-0.031	-0.241	-0.078
응답자 교육수준	-	-	-0.008	-0.018	-0.010	-0.023
응답자 심리상태	-	-	0.042***	0.284	0.037***	0.247
수정 R 제곱	0.040		0.093		0.105	
F	6.15***		39.58***		10.74***	

註: 3) 가구주 기혼이 비교범주임.  
 4) 가구주 실업자가 비교범주임.  
 5) 응답자 기혼이 비교범주임.  
 \* p<0.05; \*\* p<0.01; \*\*\* p<0.001

응답자의 심리상태는 모형 II에서와 같이 모형 III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변수와 개인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 III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應答者의 心理狀態, 應答者의 年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III의 수정 R제곱은 0.105로 복지욕구 변량의 10.5%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家口의 特性을 나타내는 변수가 個人의 特性을 나타내는 변수보다 설명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V. 結論과 含意

지금까지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해 왔던 우리 나라로서는 勞動可能한 人口(the able-bodied)의 貧困은 그 원인에 있어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勤勞可能한 貧困階層’(working poor)의 문제는 社會福祉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失業은 이제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영역이 된 것이다.

특히, 실업은 經濟的 危機, 身體的·心理的 健康의 危機, 家族關係의 危機, 社會關係의 危機 등 多次元的인 家族危機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家族解體와 社會不安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업에 대한 社會福祉의 개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한계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雇傭保險, 公共扶助와 같은 현금지원 서비스는 차치하고라도 긴급현물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보호서비스, 고용관련서비스 등은 조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失業家口의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是 무엇이며, 실업이 長期化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구에 따라 상이한 欲求의 수준을 결정하는 要因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실업가구에 대한 목표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障礙家口여부, 家口의 所得과 財產, 家口主의 雇傭形態, 失業者의 性別, 心理狀態 및 年齡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실업가구에 장애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욕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 가구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失業者家口의 特性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실업자가구 중에서 障礙家口여부, 家口의 所得과 財産, 家口主의 雇傭形態 등을 조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欲求가 더 큰 가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의 心理狀態를 조사하여 복지욕구가 더 큰 가구에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실업자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資源의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안병철, 「경제적 고통과 가족」, 『사회비평』 제19호, 1999.
- 이영문, 「경제위기 상황과 정신건강의 함수」, 『사회비평』 제19호, 1999.
- 조성희,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13호, 1999.
- 최성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대출판부, 1990.
- 통계청, 『98년 사망원인통계』, 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1999. 4.
- Broman, Clifford L., Hamilton, Lee V., and Hoffman, William S., "Unemployment and Its Effects on Families: Evidence from a Plant Closing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8, No.5, 1990.

Dail, Paula W.,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Public Welfare*, Winter, 1988.

Darity, William, "Who Loses from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33, No.2, 1999, pp.491~496.

Hernandez, Donald. J., "Jobs, Poverty, and Family Breakup," *USA Today*, Vol.122. No.2582, 1999.

Lala, Shulamith., Ashenberg Straussner, Norma Kolko Philips, "The Impact of Job Loss o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Nov/Dec, 1999.

Perrucci, Carolyn C., Perrucci, Robert., and Targ, Dena B., "Gender Differences in the Economic,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of Plant Closing in an Expanding Econom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4, No.2, 1997, pp.217~233.

Sales, Esther, "Surviving Unemployment: Economic Resources and Job Loss Duration in Blue-collar Household," *Social Work*, Vol.4, No.4, 1995, pp.483~494.

Schliebner, Connie T. and Peregoy, John J., "Unemployment Effects on the Family and the Child: Intervention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2, No.4, 1994, pp.368~372.

Theodossiou, I., "The Effect of Low-pay and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 Logistic Regression Approac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7, 1998, pp.85~104.

Walsh, Susan., Paul R. Jackson, "Partner Support and Gender: Context for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8, 1995, pp.253~268.

*Summary*

---

## Changes of the Needs of Unemployed Households for Social Services

*Sunwoo Lee·Eugene Yeo*

---

This study seeks answers to two research questions: Do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chang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What factors influence the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1998 Current Unemployment and Welfare Needs Survey』 and 『1999 Case Survey of Life Changes and Welfare Needs of the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latent needs for living cost remains about the same, while latent needs for medical cost decreased and for educational cost for children increased. Moreover, latent needs for counseling increased rapidly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Their expressive needs for emergency food stamps, emergency medical costs, tuition subsidy for children decreased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And, expressive needs for job search services decreased as they lost their hopes for finding jobs.

Therefor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the unemployed tend to give up their hope and need more emotional help.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tudy uses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 shows that whether or not disabled members are i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f household, employment status of household head, and gender, psychological status, and age of unemployed member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herefore, when governments provide social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structure, income, and assets of the household, and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household head must be taken into account.